

해외투자 관련 조세제도 및 실무적 쟁점

구 상 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기업들이 해외투자시 고려해야 하는 조세제도와 해외투자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주요한 의사결정사항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실무적 쟁점들에 관한 것이다.

해외투자 관련 주요 조세제도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조세조약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있고, 조세회피 규제를 위한 이전가격 과세제도, 과소자본 과세제도 그리고 조약편승에 대한 규제제도 등이 있다.

해외투자 관련 주요 의사결정사항은 지점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타인자본 형태로 대출할 것인지, 피투자법인에 직접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지주회사를 통해 간접투자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투자수익을 배당을 통해 회수할 것인지 아니면 지분양도를 통해 회수할 것인지 등이 있다.

해외투자 관련 실무적 쟁점으로는 먼저 해외투자 시 지주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한 후 지주회사의 지분양도(지분 간접양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인도와 중국의 과세관청이 이러한 지분 간접양도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지분 간접양도에 대한 과세가 연기되었으나, 중국은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지분 간접양도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세법과 관련한 실무적 쟁점으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한국법인이 법인세 제도가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설립된 지주회사를 통해 해외손회사에 간접투자 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해외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금 중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해외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 관련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다소 개선되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역시 비재무적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 납세자와의 마찰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해외투자, 지분 간접양도, 외국납부세액공제, Indirect Foreign Tax Credit, 해외지급보증수수료

논문투고일: 2013.05.05., 심사의뢰일: 2013.05.06., 게재확정일: 2013.06.20.

* 법무법인 지평지성, 공인회계사.

목 차

- I. 서론
- II. 해외투자 관련 주요 조세제도
 - 1. 해외투자 관련 주요 조세제도의 이해
 - 2. 이중과세 조정제도
 - 3. 조세회피 규제제도
- III. 해외투자 관련 주요 의사결정사항과 조세문제
 - 1. 지점 vs. 현지법인
 - 2. 자기자본 vs. 타인자본
 - 3.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 4. 투자수익의 회수방안 - 배당 vs. 지분양도
 - 5. 간접투자의 불가피성
- IV. 실무적 쟁점 및 시사점
 - 1. 지분 간접양도 관련 과세문제
 -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 3. 해외지급보증수수료
-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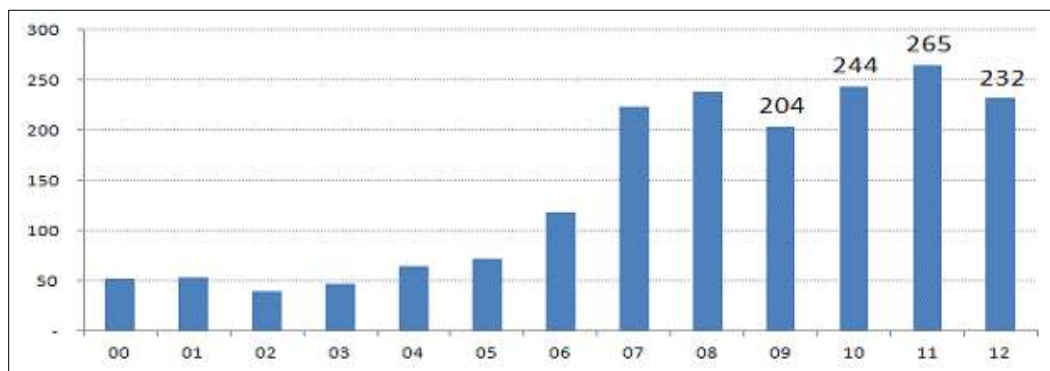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2012년 해외투자 유입액은 90억 달러이나, 유출액은 232억 달러로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약 2.6배 정도 많은 상황이다.¹⁾ 또한, 2011년 말 기준 GDP 대비 해외투자잔액 비율은 선진국 평균이 39.4%이나 우리나라는

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동향”, Vol. 2013-01, p3~4.

14.3%에 불과해 해외투자 확대의 여지가 높은 편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2012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의 경우 전 세계 유출액이 금융위기 이전 3년 평균보다 11.5%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유출액은 68.2% 증가하여 전 세계 대비 해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해외직접투자유출액>

(단위 : 억 달러)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렇듯 금융위기 이후 국내투자 유입액의 감소, 저금리 기조 및 설비투자의 감소 등 국내투자시장의 침체와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처럼 한국투자자들의 해외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각국의 투자환경, 법률 및 조세제도 등에 대한 이해나 논의는 아직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투자와 관련한 조세제도 역시 꾸준히 정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투자와 관련한 조세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한국의 투자자들이 해외투자시 맞닥뜨리게 되는 주요한 의사결정사항 및 해외투자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모쪼록 본 논문을 시작으로 해서 해외투자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해외투자 관련 조세제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해외투자 관련 주요 조세제도²⁾

1. 해외투자 관련 주요 조세제도의 이해

한국의 투자자가 해외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조세제도는 크게 피투자국가에서의 조세제도, 한국의 조세제도 그리고 양국에서의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조세조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해외투자 관련 주요 조세제도는 이중과세 조정제도와 조세회피 규제제도로도 구분해 볼 수 있다. 피투자국가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는 조세조약상 원천세 제한세율 제도가 있고, 국내세법상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제도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대표적이다. 한편, 조세회피 규제제도로는 이전가격 과세제도(Transfer - Pricing Rules), 과소자본 과세제도(Thin-Capitalization Rules), 그리고 조약편승에 대한 규제제도(Anti-Treaty Shopping Rules)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는 피투자국가와 한국 모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2. 이중과세 조정제도

가. 피투자국가에서의 이중과세 조정

피투자국가에서의 이중과세 조정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투자자가 피투자국가에 투자하여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의 원천지국인 피투자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거주지국인 한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투자국가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양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투자자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 피투

2) 해당 부분은 필자가 월간한국공인회계사에 기고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시 고려해야 할 조세문제”(2010년 7월)를 인용하였다.

자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등에 대해 피투자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아 해당 국가의 세법상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한국투자자들이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양도할 때 피투자국가에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조건 없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³⁾ 일정한 지분비율(대부분 25% 정도)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⁴⁾ 다만, 피투자법인의 자산이 주로⁵⁾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피투자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⁶⁾

한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투자할 경우 피투자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중과세 조정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나. 한국에서의 이중과세 조정

국내법상 이중과세의 조정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그리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한국투자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에 직접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며, 내국법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⁷⁾ 다만,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며, 공

3)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대표적이다.

4)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대표적이다.

5) 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6) 일본, 미국, 중국, 영국 등 많은 나라들과의 조세조약에 부동산주식 양도 관련 규정이 있다.

7)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되어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⁸⁾ 만약 5년간 국외원천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월된 세액이 공제 되지 못하고 소멸될 수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 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도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⁹⁾ 나아가, 이들 간접투자회사등의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14% 한도 내에서 환급도 가능하다.¹⁰⁾ 간접투자회사등에게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 주는 이유는 간접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간접투자회사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국내 Entity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해외법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 조세적인 측면에서 불리한데, 외국납부세액 환급을 통해 이러한 불리함을 개선하여 직접투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고자 한 것이다.¹¹⁾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외국의 피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피투자법인이 외국의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를 내국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 주는 제도이다. 피투자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피투자법인 소재지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세후소득을 배당 받는 내국법인이 다시 한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하나의 소득에 대해 2이상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의 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도 50%의 범

8)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9)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1항

10)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2항

11) 세액환급이 있더라도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직접투자와 완전히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환급세액의 한도가 14%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14%를 넘을 경우 직접투자보다 불리해지며, 또한 직접투자의 경우 피투자 외국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전체적인 부담세액을 고려하면 직접투자가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보다는 다소 유리할 것이다.

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¹²⁾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내국법인이 외국의 피투자법인에 투자하여 받는 소득에 대해 외국의 정부에서 원천세 등을 감면해 줄 경우 내국법인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정부에 납부한 직접외국납부세액이 없어 피투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 전액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외국의 정부는 내국법인이 외국의 기간산업 및 고도기술산업 등 투자유치 산업에 투자하여 외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에게 세액감면을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나, 내국법인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감면받은 세액만큼 한국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되어 외국의 정부가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에 투자할 만한 실질적인 유인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국의 정부가 조세조약 체결시 일국의 정부가 세액을 감면할 경우 이 중 일정부분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피투자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이다.

3. 조세회피 규제제도

가. 피투자국가에서의 조세회피 규제

피투자국가에서의 조세회피 규제는 일반적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규제,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 그리고 조약편승에 대한 규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이전가격(Transfer-Pricing)에 대한 규제는 한국투자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피투자국가의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외국의 과세관청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해당 외국법인에게 부과하게 된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과소자본(Thin-Capitalization)에 대한 규제는 피투자법인이 국외의 지배 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본금으로 투자 받은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그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를 손금불산입 하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조약편승(Treaty-shopping)에 대한 규제는 양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을 제3의 국가가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이다. 대표적인 조약편승 규제방법은 내국법인이 피투자국가와 유리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한 후 해당 SPC를 통해 피투자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피투자법인이 해당 SPC에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등을 지급할 때 피투자국가의 과세관청이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¹³⁾를 해당 SPC가 아닌 내국법인으로 보아 피투자국가와 한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나. 국내법상 조세회피 규제

한국에서의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역시 이전가격에 대한 규제,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 그리고 조약편승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내법상 조세회피 규제제도 중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제도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이른바 ‘배당간주 과세제도’)가 있다.

배당간주 과세제도는 내국인이 지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¹⁴⁾의 15% 이

13)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OECD Model Tax Convention 주석에서도 Beneficial Owner는 해당 조약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제11조에 대한 주석 문단9). 다만, OECD는 최근 Discussion Draft 자료를 통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해석함에 있어 “수령한 배당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제약 없이 배당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소득을 향유할 수 있다면, 그 배당소득의 수령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바 있다.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조세상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닌 경우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OECD Model Tax Convention : Revised Proposals Concerning The Meaning of “Beneficial Owner” in the Article 10,11 and 12, OECD, 2012. 10.).

14) 실제 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하인 경우 특정외국법인이 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하지 않더라도 내국인이 해당 소득을 배당 받은 것으로 보아 내국인에게 과세하는 제도이다.¹⁵⁾

그러나 특정외국법인이 고정시설(사무소, 공장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배당간주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i) 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영위법인 중 일정한 법인, (ii)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 일정한 경우 고정 시설을 보유하더라도 배당간주 과세제도가 적용된다.¹⁶⁾

한편, 주식 등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이 (i) 자회사¹⁷⁾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ii)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중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해당 해외지주회사는 배당간주 과세제도를 적용 받지 않는다.

배당간주 과세제도에 의해 과세된 후 실제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¹⁸⁾

III. 해외투자 관련 주요 의사결정사항과 조세문제¹⁹⁾

1. 지점 vs. 현지법인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16)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참조하기 바란다.

17) 해외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 이상 소유하고,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등(EU 국가, 중국과 홍콩은 같은 국가로 본다)에 소재하며, 조세피난처 과세 제도를 적용 받지 않는 회사를 의미한다.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19) 해당 부분은 필자가 월간한국공인회계사에 기고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시 고려해야 할 조세문제”(2010년 7월)를 인용하였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에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은 지점으로 진출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법인으로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현지법인은 모법인과 별개의 법적실체로서 설립시 등록자본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자본등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지점의 경우 등록자본금을 요하지 않으므로 자본등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점은 본사와 별개의 실체가 아닌 본사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지점의 소득은 본점 소득에 곧바로 합산된다. 따라서 투자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점의 손실이 본점의 이익과 상계되어 본점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점이 설립된 국가의 세율이 한국의 세율보다 낮더라도 세율차이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바로 과세되므로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 반면, 현지법인의 경우 현지법인의 손실은 모회사의 이익과 직접 상계되지 않아 투자 초기에 현지법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모회사의 법인세를 줄여줄 수 없다. 하지만, 현지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세율이 한국의 세율보다 낮을 경우 배당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점이 납부한 법인세는 본사의 법인세 납부시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된다. 현지법인의 경우 모회사가 배당소득 수령시 현지법인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피투자국가에서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투자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지점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과실송금의 경우 지점이 세후소득을 송금할 때에는 송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현지법인이 배당할 때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지점이 영업 또는 사업체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나, 모회사가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듯 지점으로 진출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법인으로 진출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조세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자기자본(Equity) vs. 타인자본(Loan)

자기자본(자본금)으로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자본(대출금) 형태로 투자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자본금으로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배당금의 지급은 피투자법인(배당지급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투자법인의 법인세를 줄여주지 못한다. 반면, 대출을 통해 투자할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는 피투자법인(이자지급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피투자법인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시 피투자법인 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자본금의 투자는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소요자금을 대출금 형태로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지배주주가 투자한 자본금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지배주주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배당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른바 과소자본 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자본금으로 투자할 경우 지분양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분양도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지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원천지국의 세율이 한국의 세율보다 낮을 경우 세후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시킴으로써 모회사의 과세소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자본금 투자에 대해서는 현지 정부가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대출방식의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가 대출금 규모 자체를 제한하기도 하고,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직접투자란 한국투자자가 외국의 피투자법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피투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낮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내국법인의 경우 직접투자로 인해 배당금 수령시 피투자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나아가, 직접투자 후 지분양도를 통해 투자수익 회수시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지국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다만, 피투자법인 지분양도시 각종 신고 또는 인허가 문제 그리고 외국환거래문제 등으로 인해 양도절차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간접투자란 한국투자자가 외국의 피투자법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중간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지주회사가 피투자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주회사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배당금을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은 직접투자보다 적은 편이다. 내국법인이 간접투자를 통해 피투자법인에 투자한 후 피투자법인이 지주회사에 배당하고 지주회사가 다시 내국법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지주회사 소재지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세액이 없어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주회사가 피투자법인 소재지국에 납부한 원천세와 손회사인 피투자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모회사 내국법인 입장에서는 모두 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50%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만이 허용된다.²⁰⁾

직접투자의 경우 지분양도가 쉽지 않다는 문제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주회사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이 적지만, 지주회사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원천지국에서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및 지분양도와 관련한 인허가 문제없이 손쉽게 투자자금을

20)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1항 및 제8항.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투자수익의 회수방안 - 배당 vs. 지분양도

투자수익의 회수방법 역시 고려해야 한다. 즉, 투자수익을 배당금으로 회수할 것인지 아니면 지분양도를 통해 회수할 것인지에 따라 조세문제가 달라지므로 이와 관련한 부분도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이 된다.

배당금으로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경우 피투자법인 단계에서 먼저 법인세가 과세되고, 세후소득을 배당할 때 주주인 내국법인 단계에서 다시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피투자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외국납부세액은 일정한 한도²¹⁾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나,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월된 금액이 소멸될 수도 있다. 한편, 배당금으로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투자수익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지분양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경우 지분양도시 조세조약 등에 의해 원천지국에서 원천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투자한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지분양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분양도시 신고와 인허가문제 또는 외국환거래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5. 간접투자의 불가피성

해외투자로 인한 투자수익의 회수는 이자, 배당, 사용료, 경영자문수수

2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료, 지분양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투자자들의 해외투자시 투자수익의 회수는 주로 이자, 배당, 지분양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배당으로 투자수익을 회수할 때와 지분양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할 때의 세부담효과의 차이이다.

배당 또는 지분양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접투자가 간접투자보다 다소 유리하다. 그 이유는 간접투자의 경우 배당으로 투자수익을 회수할 때 손회사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금 중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양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때에는 많은 경우 원천지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한국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듯 조세적인 측면에서는 직접투자가 다소 유리한 편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직접투자 외에 간접투자도 상당히 활용되고 있다. 조세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투자가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적인 측면에서 간접투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한국법인이 미얀마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미얀마에서의 법인세율은 25%,²²⁾ 한국의 최고세율은 24.2%(지방세포함)이다. 미얀마는 현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지만, 지분양도차익에 대해서는 40%의 세율로 과세한다.²³⁾ 이러한 세율구조하에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조세효과는 아래와 같다.

한국법인의 총 부담세율	배당으로 투자수익 회수	지분양도로 투자수익 회수
직접 투자	25%	40% ²⁴⁾
간접 투자	32.42% ²⁵⁾	24.2%

22) Myanmar Notification No. 111/2012.

23) Myanmar Notification No. 120/2006.

24) 한국과 미얀마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는 미얀마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35%를 넘을 경우 미얀마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조약 제13조 5항).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배당으로 투자수익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직접투자가 간접투자보다 유리하다. 반면, 미얀마법인에 대한 지분이 35% 이상인 한국투자자가 지분양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간접투자가 직접투자보다 유리하게 된다. 만약 지분양도를 통해 회수하는 투자수익이 배당을 통해 회수하는 투자수익보다 훨씬 클 경우 간접투자방식²⁶⁾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²⁷⁾ 다만, 위와 같은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투자국가들은 외국법인의 지분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한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편이어서 많은 경우 직접투자가 간접투자보다 유리하다. 그렇다면 간접투자가 이루어지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간접투자가 이루어지는 주된 이유는 투자자금의 회수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피투자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인 경우 외국환거래의 용이성 문제와 지분양도시 까다로운 인허가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자금 회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²⁸⁾ 또한, 피투자국가의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외화유출동결 등 국가위험(Country risk)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많은 해외투자시 특히 단독투자가 아닌, 재무

25) 미얀마법인의 세전소득이 100이고 법인세가 25이며 세후소득 및 배당금이 75인 것으로 가정할 때 배당금 전액을 내국법인이 배당받을 경우 미얀마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의 50% 상당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익금산입되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은 $87.5(75+12.5)$ 가 되고, 여기에 법인세 최고세율 22%가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산출세액은 19.25가 되며, 미얀마에선 납부한 법인세 25의 50%인 12.5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지방소득세포함)은 7.425가 된다. 미얀마와 한국에서 납부한 총세액은 약 32.42가 된다.

26) 미얀마 투자시에는 싱가포르를 통한 간접투자가 선호된다. 싱가포르는 미얀마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혜택 및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금융제도가 선진화되어 있어 우선주, CB, BW 등의 발행이 용이하고 미얀마에서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의 외국환송금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27) 지분양도소득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예컨대, 카자흐스탄의 경우 20%의 주식양도세가 적용되며, 조세조약에서도 7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법인의 주식 양도시에는 카자흐스탄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약 제13조), 한국모법인의 유효세율이 이보다 낮다면(11%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등) 유사한 결론이 도출된다.

28) 중국과 베트남 등이 대표적이다.

적 투자자가 포함되어 있는²⁹⁾ 해외투자의 경우 투자자금 회수의 용이성 문제가 투자구조 수립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다 보니 재무적투자자가 포함되어 있는 해외투자의 경우 조세상 이점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중간경유지국(조세피난처나 준조세피난처)에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설립한 후 지주회사를 통해 피투자국가에 투자하고, 향후 지주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이른바 지분의 간접양도 또는 ‘Indirect Share Transfer’)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IV. 실무적 쟁점과 시사점

지금까지 해외투자 관련 주요 조세제도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해외투자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과 이들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1. 지분 간접양도 관련 과세문제

많은 해외투자 사례에서 지분의 간접양도(Indirect Share Transfer)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를 규제하기 위한 외국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한 편이다. 지분의 간접양도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장 노력하는 국가는 인도와 중국이다. 아래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지분 간접양도에 대한 과세권 행사와 관련한 움직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인도의 지분 간접양도에 대한 과세

인도의 지분 간접양도에 대한 대표적 과세사례는 Vodafone Case³⁰⁾이다.

29) 전략적투자자(SI)와 달리 재무적투자자(FI)의 입장에서는 목표수익률 달성 후 지분양도 등을 통해 조속히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0) Vodafone International Holdings B.V. v. Union of India & Anr. [S.L.P. (C) No. 26529 of 2010, dated 20 January 2012].

Vodafone Case로 인해 인도에서 5년여 동안 논란이 되었던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회사 지분 간접양도소득이 인도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2012년 1월에 인도대법원 최종결정으로 인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된바 있다.

사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영국의 통신회사인 Vodafone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Vodafone Int'l Holdings, B.V.는 2007년 홍콩 소재 허치슨(Hutchison) 그룹과 에사르(Essar)그룹의 합작회사인 Hutchison Telecom Int'l Ltd.(British Virgin Islands소재)로부터 인도 통신회사인 Hutchison Essar Limited의 지분 67%를 간접 양수하였다. 즉, Vodafone Int'l Holdings, B.V.는 Hutchison Essar Limited의 지분을 직접 양수한 것이 아니라 그 모회사격인 CGP Investment Ltd(Cayman Islands 소재)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CGP Investment Ltd(Cayman Islands 소재) 지분양수도 거래는 Cayman Islands에서 이루어졌고 인수대금 지불도 Cayman Islands에서 이루어졌다.

인도과세관청은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비록 해당 거래가 Cayman Islands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Hutchison Essar Limited의 지분양도에 해당하고, Hutchison Essar Limited의 자산의 대부분이 인도에 귀속되기 때문에 인도세법상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하에 Vodafone이 이러한 자본이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Vodafone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Vodafone은 뭄바이 고등법원을 거쳐 인도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도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해당 거래는 외국회사간 거래이기 때문에 인도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함으로써 Vodafone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인도과세당국은 2012년 세법개정시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s)을 개정하여 해외에서 거래가 있었다라도 자본이득에 대해 1962년으로 소급과세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규정의 시행시기를 2014년으로 연기하였다가³¹⁾

³¹⁾ Department of Revenue,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Circular No. 3/2012, dated 12-6-2012.

최근 다시 2년을 연장하여 2016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³²⁾

인도의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시행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많은 한국기업들이 주로 그린필드(Green-field) 형태로 인도에 진출하고 있어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아닐 것이나, 본사와 지사간의 거래관계가 많으며 절세 기법이 발달한 대기업의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³³⁾

나. 중국의 지분 간접양도에 대한 과세³⁴⁾

중국은 인도보다 강력한 과세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과세관청인 국가세무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은 2009년 12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간접양도와 관련하여 “비거주민기업의 지분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관리보완 통지”를 제목으로 하는 국세함(Guoshuihan) [2009] 698호 (이하 “국세함 698호”)³⁵⁾를 발표하였다.

국세함 698호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거주자기업의 지분을 간접양도 하는 경우 만약 외국인투자회사의 소재국(지역)의 실질 세부담이 12.5%보다 낮거나 혹은 거주자의 해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양도 중국거주자기업의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관련 자료 확인 결과 외국인투자자가 (i) 조직형태의 남용이 있었고, (ii) 합리적 상업목적이 없으며, (iii) 주된 목적이 중국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중국의 주관세무기관은 경제실질에

32) <http://www.internationaltaxreview.com/Article/3142013/Chidambaram-confirms-Indian-GAAR-delay-to-2016.html>.

33) KOTRA, “인도의 휴대폰 소급과세 움직임과 대응방안”, Global Market Report 12-013, p18.

34) 해당 부분은 필자가 월간한국공인회계사에 기고한 “중국회사 지분의 간접양도소득에 대한 중국내 과세문제”(2012년 8월)를 발췌 및 인용하였다.

35) SAT, Notice on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Enterprise Income Tax Collection of Proceeds from Equity Transfers by Non-Resident Enterprises Guoshuihan [2009] No. 698), December 10, 2009.

의거 당해 지분양도거래의 성격에 대해 재정의 한 후 외국인투자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래를 재구성 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회사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세합 698호가 발표된 후 최초로 과세된 사례는 Jiangdu Case³⁶⁾이다.³⁷⁾ Jiangdu Case를 살펴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회사 중 하나인 C사는 2007년 홍콩에 자회사(B사)를 설립하였고, B사는 중국 Jiangsu Province에 중국법인인 Joint Venture(이하 “A사”)에 49%의 지분을 출자하였다. 2010년 1월 C사는 다른 미국법인 P사가 전액 출자한 D사에 B사 지분 전체를 양도(A사 지분 49%의 간접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을 수취하였다. 그런데 Jiangdu 과세관청은 B사가 “직원도 없고, A사 지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재산, 부채 및 투자도 없었으며,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B사를 특수목적회사로 판정하고 B사의 존재를 부인한 후 해당 거래는 C사가 A사 지분 49%를 직접 D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국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2010년 6월 C사는 세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하 “중·미조세조약”)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해 중국에 과세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간접양도까지 과세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³⁸⁾

36) “Circular 698 has been put into practice in China”, China Tax Bog, July 13, 2010.

37) 국세합 698호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중국 과세관청은 지분 간접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 바 있다. Chongqing Case와 Xinjiang Case가 대표적이다. 두 사례에서 중국 과세관청은 Holding Company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모회사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바 있다(Yuzhong District State Taxation Bureau of Chongqing City, Nov. 27, 2008, available at <http://www.cqsw.gov/jcsx/>, SAT, “Notice on Correctly Dealing with Treaty Abuse Case Regarding the Xinjiang Anti-Treaty-Shopping Case,” Guoshuihan [2008] No. 1076, Dec. 30, 2008).

38) 중·미조세조약은 UN Model Tax Convention에 기초하고 있는데, 양도소득 과세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representing a participation of 25 percent in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Contracting State,” 이다(중·미조세조약 제13조 제5호). 2011년 개정되기 전 UN Model Tax Convention에서는 “representing”이 지분 간접양도를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

국세합 698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i) 합리적 상업목적의 해석 문제, (ii) 조세조약상 혜택 인정여부, 그리고 (iii) 지분양수인의 원천징수 문제 등이 있다.

먼저 국세합 698호에 의하면, Holding Company가 합리적 상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합리적 상업목적 여부의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므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세법에 의하면, 합리적인 상업목적은 없다고 함은 “세액을 감소 또는 면제시키거나 늦게 납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⁹⁾ 또한, (i) 세수우대의 남용, (ii) 조세조약의 남용, (iii) 회사조직 형태의 남용, (iv)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v) 기타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는 안배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⁰⁾ 그러나 위 규정 외에 실무적으로 “합리적인 상업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통일한 기준이나 해석은 찾기 어렵다. 특히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다”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세액을 감소 또는 면제시키거나 늦게 납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매우 주관적이고 개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자들은 Holding Company가 중국회사 지분 보유 이외에는 기타 영업활동 내지 경영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자산, 규모, 인원 등이 거의 없으며, 중국회사에 대한 지배권이나 처분권 내지 중국회사 지분보유에 대한 위험 역시 최상위 모회사가 가지고 있고, Holding Company지분양도시 Holding Company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그 세율이 12.5%보다 낮은 경우 비록 Holding Company가 부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합리적 상업목적이 없는” 것으로

지만, 2011년 개정된 UN Model Tax Convention에서는 “held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___ per cent”라고 표현함으로써 간접양도도 과세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다. 개정된 부분이 창설적 규정인지 아니면 확인적 규정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C사가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역시 크게 다투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9)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7조 및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0조

40)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試行) (국세발[2009]제2호) 제92조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 과세관청이 Holding Company의 존재를 부인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회사의 지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지국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중국 과세관청이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인하였다는 명확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단계식의 Holding Company를 통해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중간단계에 있는 자회사가 그 손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사례에서 중국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면서 Holding Company가 아닌 최상위 모회사 소재지국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인정하였다는 사례도 역시 찾기 어렵다.

만약 한국의 투자자가 홍콩 등에 세워진 Holding Company를 통해 중국에 투자한 후 홍콩 Holding Company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 중국 과세관청이 한국 투자자가 중국 회사 지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한·중조세조약의 적용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한·중조세조약에서는 주요 재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부동산법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할 경우 중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 중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⁴¹⁾ 따라서 중국 과세관청이 거래를 재구성하더라도 부동산법인이 아닌 이상 지분 간접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인투자자에 대해 중국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여 논쟁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아직까지 찾기 어렵다.

그러나 Multi-holding Company 구조하에서는 과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자가 홍콩에 Holding Company1을 세우고, Holding Company1이 다시 홍콩내에 Holding Company2를 세운 후 Holding Company2가 최종적으로 중국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그 후 한국투자자가 중국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하되 다른 동아시아 사업을 위해 Holding Company1은 유지하기로 할 경우 Holding Company1이 보유한 Holding Company2 지분을 제3자에게

41)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

양도함으로써 중국사업에서 철수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Holding Company1과 Holding Company2는 모두 Paper Company로 다른 재산, 부채, 인적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중국 과세관청은 Holding Company2 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한국투자자는 Holding Company1의 실질적 본점 소재지 즉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가 한국에 있다고 이유로 한·중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중국과세관청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한국투자자의 경우에도 지분 간접양도를 통한 중국 사업철수 시 중국 과세관청에 해당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세함 698호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원천징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중국 과세관청이 지분 간접양도와 관련하여 지분양수자가 지분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분양수자에게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려고 하였다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⁴²⁾ 중국회사 지분의 간접양도와 관련하여 지분양수자가 지분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이는 한국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Holding Company 지분 양수를 통해 중국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투자자는 해당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또한 양수자의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한 문제를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소결 및 시사점

인도투자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분 간접양도에 대한 과세문제는

42) 이른바 Shanxi Case인데, BVI기업이 홍콩기업을 통해 중국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홍콩회사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례로써 Jincheng 과세관청이 이를 인지하고 지분양수자에게 지분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려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주체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지분양수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려고 하였다는 그 자체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http://www.china-taxinsight.com/342> 참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중국의 경우 지분 간접양도에 대한 과세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각국의 투자자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투자자들 역시 지주회사를 통해 중국회사에 투자한 경우 지주회사 지분양도시 중국 과세관청에 대한 보고의무 내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지주회사를 통해 새로이 중국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지분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추후 지분양수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중국 과세관청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과세기준 내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기대해 보아야 하겠지만, 그 동안 당분간은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합리적 상업목적”이 있고 “조세조약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래구조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다.

한편, 이러한 지분 간접양도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된 경우 한국 모회사가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인세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⁴³⁾ 여기서 외국정부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외국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한 제3의 국가의 정부도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3국에서 과세된 경우도 배제할 이유는 없어 보이지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연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한국기업의 해외진출방식(지점 또는 현지

43)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 제1항.

법인)에 따른 과세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29일 도입되었다.⁴⁴⁾ 그러나 대다수의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자 2002년 12월 11일에 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⁴⁵⁾ 2008년 2월 22일에는 해외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도 해당 세액이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포함되어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 경우 한국의 모회사가 50%만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⁴⁶⁾ 2009년 2월 4일에 와서는 해외자회사가 해외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도 50%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었고,⁴⁷⁾ 2010년 12월 30일에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자회사가 해외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이 아닌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한국모회사가 50%만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⁴⁸⁾ 2011년 12월 31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이 삭제되어,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100% 공제가 가능하고, 해외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⁴⁹⁾은 50%만큼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⁵⁰⁾

44) 구 법인세법(법률 제5033호, 1995.12.29, 일부개정) 제24조의3 제4항.

45) 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762호, 2002.12.11., 일부개정) 제104조의 6.

46)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9호, 2008.2.22, 일부개정) 제94조 제8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20호, 2008.2.22., 일부개정) 제104조의3.

47)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02호, 2009.2.4, 일부개정) 제94조 제8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07호, 2009.2.4., 일부개정) 제104조의3.

48)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7호, 2010.12.30, 일부개정) 제94조 제12항.

49) 해외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과 해외자회사가 해외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원천세가 대표적이다.

50) 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3호, 2011.12.31., 일부개정) 제104조의6(삭제).

나. 2013년에 개정된 부분

2012년 당시 시행되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i) 해외손회사의 소득이 해외자회사 단계에서 국외소득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모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 (ii) 해외자회사가 해외손회사의 소재지국 정부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해외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모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iii) 해외자회사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설립된 경우 한국모회사는 해외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 등이다.

한국의 모회사 입장에서는 해외자회사 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지던 크게 상관이 없으므로 이중과세조정방식(외국납부세액공제, 비과세, 면제 등)에 따라 다른 조세혜택을 부여할 이유는 없다. 이에 2013년 2월 15일 법인세법 시행령⁵¹⁾ 개정시 해외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소득 면제 또는 비과세 중 어떠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건 한국 모회사는 해외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 기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와 같이 해외투자 관련 세법은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외자회사가 법인세 제도 자체가 없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경우 해외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없다는 것과 해외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살펴보면, 호주의 경우 단계적으로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 소유하는 모든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

51) 대통령령 제24357호, 2013.2.15., 일부개정.

해, 미국의 경우 단계적으로 의결권 있는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손자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경우 하위 6단계까지 이를 허용하며, 영국은 직·간접적으로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한다.⁵²⁾

한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지분을 요건 역시 10%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⁵³⁾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적용대상 회사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투자자들이 경유지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지주회사를 통해 최종 피투자국가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자회사 소재지국에 법인세제도가 없더라도 해외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해외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비율 역시 100%로 상향하는 것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3. 해외지급보증수수료

한국투자자들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해외사업을 할 때 해외 자회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는 자금을 조달할 때 해외 자회사 자체의 신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반면, 한국의 투자자인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할 경우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⁵⁴⁾ 해외지급보증수수료란 국내 투자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자금조달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을 의미한다.

52) 백제흙, “해외지주회사의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제15권 제2호, 312p.

53)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54) 국내 기업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액 규모는 지난 2006년 128조원에서 2007년 133조원, 2008년 275조원, 2009년 284조원, 2010년 345조원 등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조세일보, 2012. 8. 8.,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820120808150001.html> 참조).

OECD 이전가격지침에 의하면,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지급보증거래는 서비스거래에 해당하며,⁵⁵⁾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rules*) 과세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도 지급보증 수수료는 일반적인 정상가격 산정원칙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즉, 해외자회사가 한국의 모회사에게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과세관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2005년 과세연도 분부터 해외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지급보증 수수료 산출을 위한 일반원칙만 명시되어 있을 뿐⁵⁶⁾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방법이 없어 과세관청과 납세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마찰이 있어 왔다.⁵⁷⁾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2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시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i)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는 방법, (ii)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는 방법, (iii)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⁵⁸⁾ 나아가, (i)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ii)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⁵⁵⁾ OECD TP Guideline 7. 13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 intra-group service would usually exist where the higher credit rating were due to a guarantee by another group member.”

⁵⁶⁾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 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등을 통해 산출가능하다.

⁵⁷⁾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50941221>, “재계, 국세청 세금추징에 집단 불복”, 2012년 5월 10일.

⁵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가격으로 적용하는 경우 이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다.⁵⁹⁾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 의한 지급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은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과 비재무적요소(해외자회사 소재지국의 국가위험 등) 등이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명문화되기는 하였으나 비재무적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과 관련한 국세청과 납세자들 사이의 마찰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해외투자 관련 조세제도는 국내의 조세제도 뿐만 아니라 해외의 조세제도 및 과세실무까지 아우르는 문제이다. 특히 해외투자시에는 피투자국가의 외국환거래문제와 인·허가문제 등 법률제도 및 실무 등도 고려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금의 용이한 회수를 위해 조세상 불이익을 일부 감수하면서도 간접투자를 선택하는 등 조세적인 측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해외투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의 해외투자 관련 조세제도 중 특히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자들의 해외투자시 간접투자도 불가피하게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투자를 보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제도가 없는 국가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간접투자 하는 경우에도 해외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비율 역시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⁵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본고에서는 해외투자자와 관련한 조세문제, 실무적 쟁점 및 시사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으나, 차제에 해외투자 관련 조세제도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국내기업이 해외투자를 함에 있어 조세문제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동향”, Vol. 2013-01.
구상수,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시 고려해야 할 조세문제”, 『월간 한국공인회계사』, 2010.7.
KOTRA, “인도의 보다폰 소급과세 움직임과 대응방안”, Global Market Report 12-013.
구상수, “중국회사 지분의 간접양도소득에 대한 중국내 과세문제”, 『월간 한국공인회계사』, 2012. 8.
백제흠, “해외지주회사의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제15권 제2호.
안종석·구자은,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6. 11.

[해외문헌]

- Dongmei Qiu, “China’s Capital Gains Taxation of Nonresidents and the Legitimate Use of Tax Treaties”, Tax Notes International Vol. 60 Number 8, 2010. 11.
Song Yan, Cai He, and Xu Yunxiang, “The First Case Xuzhou Tax Authority Refused the Abuse of Tax Treaty,” China Tax’n News, Feb 24, 2010.
Vodafone International Holdings B.V. v. Union of India & Anr. [S.L.P. (C) No. 26529 of 2010, dated 20 January 2012]
Department of Revenue,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Circular No. 3/2012, dated 12-6-2012.
SAT, Notice on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Enterprise Income Tax Collection of Proceeds from Equity Transfers by Non-Resident Enterprises Guoshuihan [2009] No. 698), December 10, 2009.
SAT, “Notice on Correctly Dealing with Treaty Abuse Case Regarding

the Xinjiang Anti-Treaty-Shopping Case,” Guoshuihan [2008] No. 1076, Dec. 30, 2008

UN Model Tax Convention (2011)

OECD, Revised Proposals Concerning The Meaning of “Beneficial Owner” in the Article 10,11 and 12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2012. 10.

<Abstract>

Overview of Taxation of Outbound Investment

Sang Su Ku

This study is related to the taxation systems which Korean companie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at the time of overseas investment, major decisions to be encountered in the course of overseas investment, and the recent issues in question in working practices. The major taxation systems related to the overseas investment are tax treaty for the 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and foreign tax credit system.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transfer pricing rules, thin capitalization rules and anti-treaty shopping rules are being operated.

With respect to the major decisions to be made for overseas investment, the following matters should be decided Whether to do business as a branch or to establish a subsidiary; Whether to invest its own capital or provide loan; Whether to directly invest in the invested corporation or to indirectly invest in the invested corporation through a holding company; and How to recover the return on investment, i.e., through the distribution of dividend or through the transfer of shares.

From the point of working practices regarding the overseas investment, the indirect investment through a holding company and the indirect transfer of shares are also frequently used in investing overseas. However, Indian and Chinese tax authorities intend to exercise the right of taxation on the indirect transfer of shares. In India, taxation on the indirect transfer of shares was postponed but the Chinese tax authorities have been exercising the right of taxation on the indirect transfer of shares since 2010.

With regard to the working practices related to the taxation acts of Korea, although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system is being operated, if a Korean corporation indirectly invests through a holding company incorporated in a state or area which does not have the corporate tax law system, it cannot enjoy the benefit of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system. Furthermore, in case of even the tax paid in the state where the overseas sub-subsidiary is located, only 50% of the tax paid may b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in Korea. Although the issue in calculating the normal price of the fees for overseas payment guarantee was improved to a certain degree due to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t is necessary to watch more whether the conflicts with the tax payers will be practically reduced.

Key words: overseas investment, indirect transfer of shares, Indirect Foreign Tax Credit, fees for overseas payment guarantee